

수원시 공고 제2022-2303호

115-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

수원시 고시 제2017-51호(2017.03.0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및 제 2021-91호(2021.03.18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된 「115-10구역 재개발정비 사업」과 관련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된(2022.7.25.)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, 주소·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재결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,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0월 24일
수 원 시 장

- 다 음 -

1. 사업종류 및 명칭 : 115-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사업위치 및 면적 :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-1번지 일원(시행면적 : 83,207㎡)
3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
 - 가. 명 칭 : 115-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전영진)
 - 나. 소재지 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89, 4층
 - 다. 115-10구역 조합사무실 연락처 : ☎ 031-258-0846
4. 공시송달 내역
 - 가. 공시송달 내용 : 토지수용 재결서 정본 (2022.7.25.재결)
 - 나. 공시송달 대상 : 2명

연번	성명	송달주소	비고
1	김○자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54	
2	115-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	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36길 25, 4층	

5. 공고기간 : 2022. 10. 24. ~ 2022. 11. 07. (15일간)

6. 교부장소 : 수원시청 본관1층 도시정비과 재개발팀

7. 이의신청 등

가.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시에는 이의신청서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제21호 서식) 작성,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,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『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함』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, 또한 같은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8. 기타사항 :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에 관한 서류 등은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하며,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(☎031-8008-3433) 및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재개발팀(☎031-228-241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소관부서	도시정비과	담당자 직,성명	주무관 정재웅	전화번호	031-228-2417
------	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